
범죄피해자를 위한 경찰 초동수사에 대한 연구

박호정*

A study on the police preliminary investigation for the protection of criminal victims

Ho-Jung Park *

요 약 범죄발생시 초동수사는 범죄피해자보호에 매우 중요하다. 경찰은 초동조치메뉴얼을 만들고 112신고시스템을 통하여 현장초동조치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경찰초동수사의 실패사례가 발생하였다. 범인검거에는 성공했으나 범죄피해자보호에 실패한 경찰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거세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초동수사의 개선방안이 요청된다. 이에 따라 범죄피해자보호를 위하여 경찰 초동수사에서 지역경찰 인사제도개선, 신고체계개선, 112신고와 119신고의 통합, 압수·수색규정의 개선, 피해자배려, 범죄대응훈련강화가 필요하다.

주제어 : 피해자보호, 초동수사, 지역경찰

Abstract In case of the crime occurrence preliminary investigation is very important. Police perform on-site first responders through the First Responders Manual and 112 information system. But recently the failure cases of preliminary investigation happened. Social criticism was castrated for the police that roundup succeeded but failed to protect the victims of crime. Avoiding these accidents, improvement of preliminary investigation is required. Accordingly local police personnel system improvement, improvement of reporting systems, Integration of 112 information and 119 information, improvement of seizure-search regulations, victim care, crime response exercises reinforcement is required for the protection of criminal victims in preliminary investigation.

Key Words : preliminary investigation, victims of crime, protect, local police personnel system improvement

1. 서론

경찰조직에서 근무성적평정 등 실적평가와 업무지침에서 범죄검거위주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면 기소중지자 몇 명 검거 또는 절도범 몇 명 검거처럼 범죄검거만으로 실적평가를 하고 동시에 범죄검거실적이 떨어지는 부서는 불이익을 받게 되었다. 이런 근무관행으로 말미암아 범죄발생시 경찰은 범인 검거만을 주로 고려할 뿐 범죄피해자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근대 전제주의시대에 세수확보차원에서 범죄의 개념을 특정인에 대해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법질서위반으로 보게 되었다. 따라서 범죄의 피해자는 개인이 아니라 국가라고 보게 되었고 군주가 범죄자를 재판에 회부

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범죄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범죄자의 처벌위주의 형사사시스템이 발전하게 되었다.[1] 범인검거위주의 형사사법시스템만으로는 대국민서비스를 절대로 향상시킬 수가 없다.

2012년 5월경 수원에서 오원춘사건이라고 불리는 112 신고를 한 여성의 억울한 죽음이 발생하였다. 수원여성 납치살인사건으로 주택가에서 여성을 납치해 살해한 다음에 범행을 숨기기 위해 시신까지 잔혹하게 훼손한 사건이다. 피해자가 사망하기 전에 112신고를 통해 경찰에 직접 신고했지만 탐문 수사 등 초동 대처가 부실했던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되었다. 범죄에 대처할 때에 국민이 진정으로 경찰에게 기대하는 것은 범인 검거가 아니라

*대덕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논문접수: 2012년 10월 30일, 1차 수정을 거쳐, 심사완료: 2012년 11월 20일

범죄피해자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경찰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 준 사건이다. 범죄피해자보호는 단순한 대국민 서비스가 아니고 경찰의 본래의 임무에 해당하기 때문에 범인 검거뿐 아니라 범죄피해자보호의 측면까지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경찰이 되어야만 한다. 피해자보호를 위한 경찰활동이 이루어지면 경찰의 사건처리 과정 중에 발생할 수 있는 피해자의 제2차 피해를 방지할 수가 있다. 또한 범죄신고의 증가와 함께 피해자의 수사협조로 증거확보가 용이하게 되어 사건의 신속한 해결도 가능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범죄피해자보호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경찰의 범죄대응능력도 강화되는 효과를 거둘 수가 있는 것이다. 2000년 이후 범죄피해자보호를 위해 많은 피해자보호제도와 법령이 완비되었으나 경찰의 범죄대응시스템과 경찰관의 인식전환이 없는 관계로 범죄피해자보호는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가 없다. 이에 따라 초동수사에 경찰이 어떻게 변화해야하고 경찰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피해자 제도를 어떻게 바꾸어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검토하기로 한다.

2. 경찰의 초동조치 실태

2.1 경찰의 초동조치메뉴얼

초동수사란 범죄가 발생하였을 때 범인을 체포하고 증거를 발견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현장중심의 수사활동을 말한다. 범죄가 일어난 다음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가 멸실되기 때문에 증거확보가 어려워지고 범인이 도주할 시간적 여유가 증가하여 범인 검거가 어렵게 된다. 이와 같이 증거확보와 범인검거가 범죄발생 초기에 이루어지는 초동수사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초동수사는 중요한 수사방법이다. 수사의 3대원칙중 하나인 신속착수의 원칙, 현장보존의 원칙이 초동수사와 관련이 있다.

2.1.1 신고접수

최초 신고사건을 접수하는 경찰관은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자세로 신고를 접수, 피해자의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피해자는 신고당시 몹시 당황한 상태이거나 생명·신체·재산 등을 침해받아 의지할 곳은 경찰밖에 없으므로 최대한 친절하게 응대하고, 경찰관 스스로 침착한 마음가짐으로 피해자를 안도하게 한 뒤 필요한 내용을 간결히 청

취하고 침착한 마음가짐으로 신속·정확하게 처리해야 한다. 과거 경험이나 선입관에 의한 주관적 판단으로 사건의 진상을 잘못 청취하면 이후 수사에 악영향을 미치므로 선입관을 갖지 않도록 노력하고 관할외 사건은 관할 기관에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초동조치를 실시한다.[2]

2.1.2 현장출동

경찰관이 신속히 범죄현장에 출동할 수 있다면, 그만큼 피해자 구조, 피의자 체포, 피해품 회수, 중요한 증거와 목격자 확보의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므로 범죄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빠른 시간내에 현장에 출동하여야 하며, 현장도착에 상당시간이 걸릴 것이 예상되는 때에는 인근 근무자에게 필요한 조치의 의뢰하여야 한다. 상황에 따른 출동방법을 고려하여 노출·비노출 출동여부를 판단하는데 순찰차량을 이용할 것인가 일반 승용차를 이용할 것인가, 경광등이나 사이렌을 켤 것인가 현장에서 하차할 것인가 아니면 인근에서 하차도보로 이동할 것인가 등을 판단한다.

성폭력, 가정폭력 사건 등 피해자가 피해사실이 주변에 알려짐으로 인해 또 다른 피해가 예상되는 사건의 경우에는 근무복보다는 사복, 순찰차보다는 일반승용차를 이용하여 출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112지령실과 수사지휘 간부는 지구대와 출동형사들에게 출동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지시한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피해자의 신체·생명의 보호 및 구호활동을 전개하며 인명을 경시하는 듯한 태도는 금물이고, 피해자가 부상을 입은 경우 현장 도착 즉시 피해자 구호조치하며 현장은 가능한 한 원상태로 보존해야 한다. 피해사실 청취시에는 피해자의 주장을 경청하고, 사건해결의 의지를 보여 신뢰감을 부여해야 한다. 피해자에게 피해자안내서를 교부하고 피해자가 각종 제도 및 지원단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범죄신고자나 목격자에 대한 보복, 인질강도 및 약취유인, 가정폭력사범 등의 경우 피해자 생명·신체에 대한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피해·신고 내용에 대한 진술이나 범인식별 등을 위하여 경찰관서 등으로 피해자 또는 신고자를 동행할 때 가해자 또는 피의자 등과 분리 동행하여 피해자 또는 신고자에 대한 위하나 보복을 방지하고 용의자가 옆에 있거나 순찰차에 승차시킨 경우, 무전이나 순찰차 네비게이션 등을 통하여 신고자의 이름, 전화번호 등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3]

2.2 범죄피해자를 위한 경찰 초동조치의 현황

2.2.1 112신고 시스템 확대 구축

112순찰차 신속배치 시스템(IDS)이란 112순찰차에 설치된 위치확인시스템(GPS)단말기를 통해 순찰차량의 위치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경찰력을 보다 효율적·체계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2004년 인천지역에 IDS가 최초로 도입된 것을 시작으로 2010년까지 서울과 6대 광역시를 비롯, 경기지역 전 경찰관서에 IDS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였다. 112신고 접수시 IDS를 활용하여 현장과 가장 가까이 있는 순찰차의 네비게이션에 신고내용, 신고자위치, 목표장소까지의 최단거리 등을 표시함으로써 현장 도착시간이 단축되었고 그 결과 현장 검거율도 향상되었다. 또한 무선조회시스템을 구축하여 순찰차량에서도 수배내역이나 차량등록사항 등을 직접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경찰의 현장대응력 향상에 기여하였다.[4]

경찰청은 2010년 1월 1일부터 112신고 대응시스템을 전면 수정하여 기존의 모든 112신고에 대한 출동방식을 변경하여 신고사건의 상황에 따른 차별적 경찰대응을 실시하고 있다. 이는 112신고 건수는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는 반면, 지역경찰의 인력은 상대적으로 증가하지 못하면서 신고가 집중될 때는 신고출동 지연사례가 발생하여 신고대응능력은 약화되는 부작용이 점차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변경된 112신고대응 시스템의 내용은 code 1, code 2, code 3 로 나뉘어 code 1은 범죄로부터 인명·신체·재산을 보호하거나 신속한 범인검거가 필요한 신고에 대한 긴급출동에, code 2는 code 1에 속하지는 않으나 경찰의 현장조치가 필요한 신고는 일반출동에, code 3은 ‘불법주차’, ‘생활소음’, ‘단순불편’신고 등 경찰소관 이외의 업무이거나 현장조치가 필요한 신고는 비출동에 사용된다. 2008년부터 인천, 대전, 충북, 경남 등 4개 지역에서 시범운영하였으며 그 결과 불필요한 신고출동이 줄고 긴급출동시간이 일반신고보다 21초나 단축되었다.[5]

오원춘 사건에서 문제되었던 112신고처리와 관련하여 경찰에서는 이원화되어 운영되었던 112신고센터와 상황실을 통합하고 인원을 증원하고 112종합상황실에 근무하는 경찰관에 대해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112신고시스템을 신고유형·단계별매뉴얼을 정비하고 활성화함으로써 중요사건 발생 시 신고자의 음성과 현장상황을 출동하는 경찰관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이와 별도로 신고자의 위치와 상태를 보다 세밀하고 정확하게 파악하

기 위해 신고자·지방청112센터·경찰서 지령실 간 3자통화 시스템을 구축하고 신고내용에 대한 전담분석관을 운용중이며, 긴급상황 시 신고자의 정확한 위치추적을 위해 소방과 MOU를 체결하는 한편 GPS방식을 도입하여 오차범위를 최소화하기로 하였다.

2.2.2 현장 초동 조치

사건 접수 시 초동조치는 신고접수, 현장도착전 단계, 현장도착단계, 현장조치, 연행 및 구호 단계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신고 접수 시 관할을 불문하고 접수한 다음 초동조치 후 관할기관으로 통보하며 침착한 마음가짐으로 신속·정확하게 내용을 청취하고 발생일시·장소, 범인·피해자 인적사항, 범행수단·방법, 피해사실 및 결과, 도주방향, 목격자 등을 구체적으로 접수하며 신고의 진위여부와 중대사건으로의 발전성을 고려한다. 또한 중요사항, 장소, 범인의 현재유무 등을 우선 청취하여 경찰관에게 무전으로 선출동조치 하고 구체적 내용 청취와 출동경찰관을 추가로 통보한다. 둘째, 현장도착전 단계에서는 위치·범인상태 및 인원, 흉기소지여부 및 종류와 같은 현장상황에 대한 최대한 많은 정보를 파악하고 상황에 따라 권총·경찰봉·수갑과 같은 기본장구와 방검복과 같은 장구를 사전에 준비하고 지원병력이 필요한 경우 즉시 무전으로 지원요청 하며 범인이 흉기를 소지하거나 2인 이상일 경우 2명이상 출동을 원칙으로 하고 1명근무시에는 일단 출동하면서 지원을 요청한다. 현장출동은 모든 경찰력을 동원하여 신속히 현장에 도착하여야 하고 출동중 거동수상자 검문을 병행하여 범인검거에 주력하여야 하고, 출동인원이외의 경찰관은 발생장소 근거리 예상도주로를 차단하고 포위하여야 한다. 현장접근 시 상황을 판단하여 일반적으로 강·절도범, 인질범 등 검거목적출동의 경우 경광등·싸이렌을 끄고 은밀하게 접근하며 음주소란, 집단폭력등 범인의 행동저지목적의 경우에는 경광등·싸이렌을 사용하여 범죄분위기를 제압하는 등 상황에 따라 노출·비노출을 사전에 판단하고 현장도착후 상황을 무전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셋째, 현장조치는 현장에 범인이 있다는 가정하에 철저히 주변을 탐문하고 관찰하여야 하며 범인발견 시 침착하고 냉정하게 상황에 적합한 안전한 체포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현장에 도착하면 주변상황과 지형·건물의 구조를 파악하여 진입로나 도주로를 확인하고, 진압방법·총기사용·경계 등 임무를 사전에 명확히 분담하여야 하고 예상했던 상황과 다를 때에

는 즉시 행동요령을 수정하고 단독제압이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되면 즉시 추가지원을 요청하여야 한다.[6]

범인검거시 ①2인1조, 권총들고 현장입장 ②총구공중지향, 사주경계, 범인과 대항 ③범인과 3m유지, 투기·투항명령, 공포발사 ④기선제압, 범행포기, 항거불능조치 ⑤1명은 경계, 1명은 몸 수색후 검거 연행이라는 범인검거 5대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넷째, 연행시 수갑 시정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고 승차시에 피의자는 뒷자석 좌측 경찰관은 우측에 동승하여 감시하며 저항이 심하거나 흉악범은 중앙에 위치시켜 두명의 경찰관이 호송하도록 한다. 또한 중요범인등은 수갑을 뒤로 채운채 연행한다. 범인검거후 즉시 피해자를 구호하여 가족 등 관계자에게 의뢰하며 피해자를 옮긴 후에는 증거보존하고 위치, 자세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7]

2.2.3 범죄현장 수색

피해자 신병확보가 안된 경우 면밀한 탐문을 통해 위치를 추정하여 피해자의 신병을 신속하게 확보해야 한다. 신속한 행동이 중요하므로 범죄현장을 신속히 판단, 결정하고 합법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즉, 용의자의 집이나 차량 안, 용의자가 몸에 지니고 있을지도 모르는 증거를 찾기 위해서 상대방의 자발적 동의를 얻거나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특히 실종자가 살해·납치·상해·성폭행 되었다고 생각되는 실종사건에서는 압수·수색영장을 지체없이 확보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8]

수색은 실종사건 수사 시작이자 끝이라고 할 정도로 매우 중요하다. 사건발생 직후 이루어지는 신속하고 체계적인 수색은 실종사건이 조기에 해결될 것인지, 아니면 장기 미제사건으로 남을지를 결정할 수 있는 핵심 사항이다.

수색과 관련하여 핵심저긴 범죄 용의지점을 확인하고, 거기에서 시작하여 덜 중요한 지역으로 수색을 진행해나가야 한다. 수색은 현장에 최초로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실시하되, 초기단계에 개입했던 경찰관들과 수사관들에 의해 사건에 대한 각종 정보가 수집되면 재차 전방위적이고 본격적인 수색을 해야 한다. 친구들이나 이웃에게 동의를 구하고 그들의 집을 방문하고 자동차를 확인한다. 납치·유괴사건의 용의자가 같은 동네에 살고 있을 수도 있고, 단순 가출사건이라 하더라도 실종자가 사전에 친구나 이웃들로부터 조언을 구했거나, 가족이나 보

호자 몰래 이웃이나 친구 집에 머무르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어떤 지역이나 장소를 수색할 때에는 자칫 증거를 놓치는 경우가 없도록 면밀하게 하되, 실종원인이나 동기를 찾으려 노력해야 한다. 실종사건의 수사 초기에는 대규모 수색이 정당화 된다. 관련자 진술, 현장 조사 결과, 범죄현장과 증거의 대규모 수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지체없이 실행해야한다. [9]

3. 범죄피해자보호에 실패한 경찰 초동 수사 사례

3.1. '수원 살인사건' 경찰 총체적 부실이 부른 참극[10]

1일 경기 수원에서 발생한 여성 살인사건은 경찰의 총체적인 수사체계 부실이 불러온 참극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사건처리 과정에서 지휘선상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고, 112신고센터의 엉뚱한 지령은 현장 혼란만 가중시켰다. 사건을 수사·지휘한 경기지방경찰청은 8일 오후 수사결과와 감찰결과를 발표하고 수원중부경찰서장과 112신고센터 총괄책임자 등 10명을 엄중 문책하기로 했다.

질박한 상황이 이어지는 동안 경찰이 범행현장 주변에서 부실한 탐문을 계속한 것은 112신고센터의 엉뚱한 지령 때문이었다. 감찰 결과 112신고센터 근무자는 긴박한 상황임에도 신고자의 위치와 주소를 반복해서 질문하는 등 신고접수를 미흡하게 했고, 지령요원에게는 범행장소를 특정할만한 내용을 전달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당시 '지동초교를 지나서 못골놀이터 가는 길', '지동초교에서 못골놀이터 전의 집'이라고 수차례 현장을 설명했는데도, 112신고센터 근무자는 '못골놀이터 가기 전 지동초교 쪽'이라고만 전달해 현장에 혼선을 줬다.

특히 112신고센터 근무자는 피해자가 집 안에 있다는 사실을 누락했고, 접수처리를 총괄하는 센터 팀장도 이를 바로잡지 않고 그대로 지령자에 전달했다. 또 통화 과정을 센터 근무자들이 함께 들을 수 있는 내부공청이 이뤄진 상황에서 피해자의 비명소리가 계속해서 들려왔지만, 센터 근무자들은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단순 성범죄나 부부싸움으로 치부했다.

실제 통화가 5분44초 정도 지났을 무렵 센터 근무자가 "부부싸움 같은데"라고 말하는 내용이 그대로 녹음됐다.

수원중부서 상황관리관도 112신고센터로부터 '코드-1, 성폭행 진행중'이라는 지령을 받아 놓고 단순 성폭행으로 판단해 현장 경력 추가 배치나 보고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같은 상황 인식은 사건 당일 오후 10시51분께부터 현장 탐문에 나선 경찰들에게 그대로 전해졌고, 사건현장을 살살이 뒤지지 못한 결과로 이어졌다.

또 경기경찰청은 올해 112신고센터에 신규 직원 29명을 충원했지만, 현장 경험이 적은 직원에 대한 전문교육을 게을리 해 이같은 참변을 불러왔다.

3.2 오원춘 사건 말았던 경찰서, 112 신고에 또 부실 대응[11]

지난 4월 '오원춘 사건'을 담당했던 수원중부경찰서가 또다시 112 신고전화에 부실하게 대처, 30대 여성이 동거남으로부터 이틀간 폭행을 당해 중상을 입은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20대 여성을 납치 살해한 오원춘 사건 당시 112 신고 체계의 개선을 거듭 다짐했지만 말로만 그친 셈이다.

지난 17일 0시34분쯤 경기 수원시 지동에 사는 ㄱ씨(31·여)는 112에 전화를 걸어 "(집주소를 대며) 아침부터 맞았는데요. 빨리 좀 와주세요"라며 22초간 긴급하게 구조 요청을 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기경찰청 112 종합상황실은 관할 경찰서인 수원중부경찰서 행궁파출소에 경찰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확인하는 '코드2' 출동 지령을 내렸다.

그러나 이 파출소 경찰관 2명은 현장에 가보지도 않은 채 신고 발신지로 다시 전화를 걸었고, 전화를 받은 최씨에게 사건 내용을 물었다. 최씨는 "그런 일이 없다"고 발뺌했다. 경찰은 최씨의 말만 믿고 출동하지 않았다. ㄱ씨의 구조 요청도 허위 신고로 덮어버렸다. 경찰은 가정폭력의 특성을 감안하지 않고 피해 여성의 신고전화를 받고도 가해 남성의 해명만으로 사건을 종결시켜 버린 것이다.

4. 범죄피해자보호를 위한 경찰초동수사의 문제점

4.1 지역경찰관의 문제점

현장에 임장하는 경찰이 어떤 생각과 가치관을 가지고 피해자를 대면하느냐 하는 것은 향후 계속되는 형사

절차와 관련하여 중요한 문제다. 최초 출동한 경찰관이 어떤 자세로 긴급조치를 취했느냐하는 것, 곧 초동조치의 질(quality)의 정도가 사후 피해자의 피해회복의 속도에 영향을 주고, 외부 도움에 대해 수용하는 정도를 결정하며, 수사기관에 협조하는 정도를 결정짓는다고 한다.[12]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사건의 대부분이 현장 초동조치업무를 수행하는 지역경찰관과 관련이 있는데, 이들은 대부분이 학습된 무기력에 빠져있는 것 같다. 범죄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와 최초로 접촉하는 것은 지역경찰관인데 자신의 경력 중 대부분을 지구대에서 보내고 있는 경찰관의 경우 법규와 매뉴얼, 판례를 숙지하고 있어도 승진이나 상급부서에 가거나 보수를 더 받는다는 등의 이점이 없다. 이와 같이 승진, 보수, 보직과 같은 혜택이 없는 환경에서 스스로 업무를 위해 노력하기를 기대할 수 없고 장기간 같은 업무에 종사하면서 자신의 노력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지급되는 보수는 경찰관에게 최소한의 업무수준만 유지하도록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경찰조직은 현장중심의 인력운영 보다는 상급부서중심의 조직운영을 하고 있어 상급부서가 승진, 보수, 보직, 처우에서 우대받는 현실에서 지역경찰관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근무만족도가 낮은 상황이고, 현장경찰관이 수행하는 업무의 숙련도와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승진, 보직, 처우는 수동적인 경찰관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와 같은 지역경찰의 현실은 바로 국민에 대한 피해로 이어지고 이에 부수하여 범죄피해자의 예방과 보호는 미흡할 수 밖에 없다.

4.2 경찰신고체계의 문제점

범죄피해자들은 112신고를 통해 긴급한 범죄에 대한 경찰의 도움을 요청하고 있어 112신고는 절박하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국민에게 즉각적이고 만족할만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최초의 단계라고 할 수 있다. 다양한 매체를 통한 범죄신고가 있지만 대부분의 형사사건은 112신고전화를 통해 신고접수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후 초동조치와 수사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어 112범죄신고제도의 효율화가 필요하다.

4.3 신고접수와 처리방법의 문제점

범죄를 경험하고 신고하는 사람은 신고를 할 때 놀라고 당황한 나머지 제대로 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

문에 신고를 접수하는 경찰관은 냉철하고 이성적으로 대처하여야만 하고, 허위신고나 오인신고라고 속단하지 말고 판단을 잘하여야 한다. 실제로 피해자가 제대로 신고하는 사항을 허위신고나 경미한 신고라고 선불리 판단하여 엄청난 피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도 일어나고 있다.

4.4 112신고와 119신고 분리의 문제점

최근 울산 성남동 한 원룸에서 20대 자매 2명이 살해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하지만 당시 경찰과 소방당국은 동시 출동을 하지 못했고 23일 현재까지도 범인을 검거하지 못하고 있다. 피살된 자매 중 언니가 "동생이 흥기에 찢려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119에 했고, 출동한 구조대원은 신고한 언니 역시 함께 숨진 것을 발견하고 난 뒤에서야 경찰에 신고했기 때문이다. 1분 1초가 급박했던 당시 상황을 고려해볼때 119와 112신고체계가 통합되어 경찰이 더욱 신속하게 출동했다면 적어도 사건현장에서 용의자를 검거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미국, 중국 등과 달리 한국에서 119와 112신고시스템이 분리되어 있는 이유는 뭘까? 우리나라는 1948년 정부수립 이후 경찰행정체제에 소방행정이 흡수되어 있었으나 1970년 정부조직법이 개정되면서 소방사무가 지자체로 이양되기 시작했다. 미국의 경우는 우리와 달리 지방정부 아래 경찰과 소방업무가 있기 때문에 조직이 분리되더라도 신고체제를 통합해 운영해올 수 있었던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119는 지자체에, 112는 정부조직이기 때문에 신고시스템을 통합하자는 주장을 어느 한 쪽에서 내세울 경우 조직이기주의로 몰릴 수도 있는 것이 현실이며 현재 사회조건상 자치경찰도 어렵다. 조직을 관리하면 그에 따라 예산, 인사 등 기득권이 생기는데 통합시스템을 운영한다면 이를 어디 산하에 둘 것인지 하는 논란이 생길수 밖에 없다

112와 119 시스템이 분리되어 있으니 사건이 발생하더라도 신속하게 대처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13]

4.5 압수·수색의 문제점

먼저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규정이 있다. 사법경찰관이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

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18조 제2항)

다음에는 영장에 의하지 않는 압수·수색규정이 있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체포에 수반하여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영장없이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 즉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 필요가 있는 때에는 영장 없이 주거 또는 간수하는 저택, 건조물 등에 출입하여 피의자를 수색할 수 있으며, 체포의 현장에서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위 체포하는 경우에는 통상체포, 현행범체포, 긴급체포가 전부 포함되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구속 영장의 집행의 경우에 준용한다.(동조 제2항)

이상의 압수·수색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피해자가 소유·소지·보관하는 물건이라도 범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압수·수색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예컨대, 강간이나 강도를 당한 범죄피해자가 있다고 가정하면 범죄피해자의 집에서 범의인이 놓고 간 칼과 같은 증거물을 발견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실시할 수가 있는 것이다. 또한 강도나 절도를 당한 범죄피해자의 소유물건을 경찰에서 압수할 경우도 존재한다. 이와 같은 경우 경찰은 수사상 증거확보라는 측면만을 고려하고 압수·수색이 끝나고 나서 현장을 철수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되고 범죄피해자는 또 다른 스트레스를 받게 될 여지가 있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에서는 범죄피해자에게 피해품을 환부하여 주는 규정이 존재한다. 압수물을 압수한 다음에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은 피고사건 종결전이라도 결정으로 환부하여야 하고 증거에 공할 압수물은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에 의하여 가환부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133조 제1항) 증거에만 공할 목적으로 압수한 물건으로서 그 소유자 또는 소지자가 계속 사용하여야 할 물건은 사진촬영 기타 원형보존의 조치를 취하고 신속히 가환부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133조 제2항) 압수한 장물은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때에는 피고사건의 종결전이라도 결정으로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134조) 이상의 요건을 갖추면 경찰은 피해자에게 환부 또는 가환부를 실시하는데, 이러한 결정을 하기 전에 사 전에 범죄피해자에게 의사를 묻고 실시하는 것이 범죄피해자에게 유리하고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지만 현실에서 경찰은 이와 같은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을 보인다. 더욱이 압수물이 상실 또는 파손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그 위

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압수물의 파손·멸실·부패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이 불편한 경우에는 이를 매각하여 그 대가를 보관하다가(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32조 제2항) 제133조와 134조의 사정이 발생한 경우 피해자에게 환부를 실시해주어야 한다. 또한 압수물처분과 관련된 사항은 범죄피해자에게 통지를 하도록 규정되어있다.(형사소송법 제135조) 압수물 환부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보관비용의 면제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있어 범죄피해자보호에 미흡하다고 본다. 그리고 압수물 보관중 경찰이 압수물을 파손시키거나 잃어버렸을 때 보상규정이 존재하지 않아서 피해품을 반환 받으려는 범죄피해자의 입장에서 피해품반환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수가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2004년도 경찰통계에 의하면 범죄로 인한 범죄피해품 회수율이 사기피해자의 경우 8%에 불과하며 회수율이 가장 높은 배임죄도 23%에 불과하여 회수율이 저조하다. 사기나 배임과 같은 경제범죄의 경우는 범죄성립 여부를 밝히기가 어려운 사건이어서 수사가 어렵고 민사사건을 형사사건화 하여 고소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처벌이 힘든 면도 있지만 강도와 절도사건의 경우에 피해품 회수율이 불과 15%정도 밖에 되지 않는 점은 범죄피해자에게 실망을 가져올 수 밖에 없다.[14]

4.6 초동수사시 피해자에 대한 배려의 문제점

초동수사에서 피해자를 범인검거에 협조하는 객체로만 인식한다면 경찰에 의한 2차 피해자화가 발생할 수가 있으므로 피해자를 상대로 면담을 하면서 피해자의 연령, 심리상태, 신체적상황을 고려하여 면담방법, 면담시간, 면담장소를 결정하여야 하며 피해자가 신속한 피해회복을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주는 일도 초동수사를 담당하는 경찰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경찰청은 2004년 9월부터 살인, 강도, 강간과 같은 강력범죄가 발생하면 초동수사부터 피해자를 보호하는 피해자서포터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피해자서포터들은 사건이 발생하면 현장에 출동하여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할 임무를 가지고 피해자가 부상을 입었을 때 응급조치를 하고 병원으로 이송해야 하고 피해자의 신변보호와 수사절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그러나 피해자서포터는 아직 경찰관들에게 제대로 인식되지 않아 이런 제도를 모르는 경찰이 많고 실질적인 피해자보호활동보다는 상담위주의 운영이 되고 있어 전문성이 부

족한 실정이다. 또한 교육도 부실하다고 본다.

4.7 현장출동시 대응방안의 문제점

경찰이 범죄피해자를 보호함에 있어 가장 필요한 것은 범죄발생 시에 신속하게 대처하여 범죄를 제압하고 피해자를 구조하여 피해상황을 마무리함에 있다. 경찰은 사전에 발생이 예상되는 사건 유형별로 대응방안을 미리 만들어 범죄에 대처할 수 있는 치밀한 사전노력이 요구된다. 최근 절도나 단순강도사건으로 시작되었다가 경우에 따라 인질극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인질범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거나 중상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피해자보호에 주의할 기하여야 한다.

5. 범죄피해자를 위한 경찰 초동조치의 개선방안

5.1.1 지역경찰관의 개선방안

경찰의 기본임무는 검거보다는 범죄예방활동이나 지리안내, 홍보, 피해자보호 등 주민서비스에 중점을 두어야 하며 단속과 검거는 범죄예방의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으나 지역경찰관의 기본업무가 되어서는 안된다. 따라서 현재의 평가방법을 개선하여 평가지표를 다양화하여 경찰관의 근무성적, 외근성적, 성가평가, 관서평가 지표를 변경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경찰관근무성적 중 기여도 평가란에 범인검거위주로 평가지표가 작성된 것을 다양화하여 범죄피해자예방이나 범죄피해자보호활동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이 요구된다.

지역경찰 자체의 인사시스템을 개발하여 묵묵히 성실하게 근무하는 지역경찰관을 인사에서 우대할 수 있는 진정한 현장중심의 인사제도가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경찰관이 서류에 휩싸이지 않고 제대로 현장업무를 할 수 있도록 Task Force팀을 구성하여 연구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현재 수사권 독립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수사경과제는 유능한 직원과 무능한 직원으로 구분하여 운영하는 제도로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사경과제를 실시한 후 수사경과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경찰관들은 소외의식을 느끼고 같은 조직에서 두개의 다른 집단으로 운영되

는데 따른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 유능한 직원은 대부분 수사경과로 편입되어 지역경찰의 범죄대응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따라서 수사경과폐지를 통한 수사경찰과 지역경찰의 적절한 배분과 순환근무는 대국민 서비스를 담당하는 접점부서인 지역경찰의 자질과 자긍심을 향상시켜 결국에는 범죄피해자보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본다.

5.1.2 경찰신고체계 개선방안

경찰 조직 쇄신으로 국민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민원 대표번호를 1566-0112번에서 182번으로 변경, 일반 민원 전화를 전담하는 경찰콜센터를 신설하고 112신고는 긴급 범죄에 집중 대응할 수 있게 하기로 했다. '범죄신고는 112, 민원상담은 182'라는 국민인지도를 제고하기 위한 홍보도 이뤄진다. 허위신고에 따른 경찰력 손실을 막기 위해 허위신고의 죄질이 중한 경우 형사입건과 함께 손해배상청구를 병행하고 벌금도 1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키로 했다.[15]

일본의 범죄신고 대응시스템은 1948년 개설하여 현재에 이르는 110번 즉 경찰통보용 전화와 상담전용 전화를 구분하여 활용하고 있다. 즉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전화는 경찰통보용전화로, 긴급하지 않은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신자 전화번호 확인이나 위치추적 뿐만 아니라, 신고에 대한 사후 조치사실을 통보하고 있으며, 사전에 등록된 휴대전화를 통하여 범죄정보를 실시간으로 전송함으로써 범죄에 대한 경고 및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다. 또한 1999년에 시작된 경찰개혁의 일환으로 범죄로부터 주민의 안전과 치안서비스의 일환으로 각 주재소에 경험 있는 생활안전상담원을 배치 운용함으로써 평상시 주민들에 대한 광범위한 상담을 통하여 범죄로부터 안전한 치안을 유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16]

110번은 신고접수와 동시에 현장주변의 순찰중인 순찰차(위치자동보고장치, GPS)에 지령을 하게 되며, 순찰차가 가까이 없는 경우에는 현장관할 경찰서의 교방의 경찰관으로 하여금 출동하도록 하며, 필요시 긴급배치를 발령하며 출동한 경찰관은 현장에 도착하여 필요한 조치(119통보, 구호조치 등)를 하게 된다. 2007년 범죄 신고에 대한 대응시간(Response Time)은 전국 평균 7분 2초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110번 사용자 전화회선은 전화 역담지장치를 이용하여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게 되며, 신고 접수 시 신고센터의 경찰관은 가장 먼저 구체적 상황이

나 범인에 대한 정보(인상착의, 도주방향 등)를 그리고 사고의 경우에는 119에 신고했는지를 확인하여 119통보를 통한 소방기관의 구급차 출동을 요청하게 되며, 다음으로 수사에 필요한 신고자의 성명, 전화번호와 첫 발견자 등에 대하여 청취하여 통보(전파)하게 된다. 이러한 110신고 지령실은 공중전화의 전화번호 표시, 신고 장소 파악, 이동전화의 경우GPS를 통한 위치 특정, 신고지역을 모르더라도 근접 도로표식이나 전주(전봇대)번호에 의한 위치특정, 공중전화의 경우 전화박스 고유번호에 의한 위치특정 등의 기능을 갖추고 있다. 또한 역탐지 기능은 물론 목소리에 의한 신고 불가능시 버튼(숫자) 추적 기능 등을 활용하고 있다.[16]

미국의 대도시경찰의 범죄신고 대응체제는 두 가지로 구분되는바 첫째는 경찰긴급911(police-emergency 911)로서 이는 주로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 심각한 범죄상황, 진행 중인 범죄 또는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에 활용되고 있으며, 두 번째는 긴급한(즉각적인) 조치까지 필요하지 않은 경우(Non-Emergency)와 기타 정보안 내로 구분할 수 있다. 처음의 경우는 경찰긴급911 전화로서 전문적인 교육과 훈련을 받은 지령자(operator)에 의하여 운영된다. 일반적인 911시스템을 살펴보면 휴대전화, IP전화나 일반전화와 같은 유·무선전화를 통한 신고 시 911네트워크의 자동전화번호확인시스템(ANT)을 통하여 신고전화번호가 확인되며, 전화회사에 가입된 가입자의 성명, 주소지 및 결제정보를 통한 자동위치확인(ALI)시스템에 의하여 위치가 확인된다. 이를 위하여 전화회사와 협력(공동)하여 만들어진 마스터주소 가이드(MSAG)가 제공되며 가입자 전화번호, 계약자 주소와 거리 위치 등의 정보가 자동으로 컴퓨터 시스템에 의하여 구역 내 접수센터(PSAP)로 연결된다. 비-긴급 311시스템은 원래 미국의 전화회사와 연방통신위원회(FCC)가 경찰 긴급전화인 911과 별도로 세 자리수의 번호로 311을 비-긴급 전화번호로 채택하였으며, 1996년 10월 처음으로 볼티모아 경찰청(baltimore (Md.) Police Department)이 비-긴급 경찰전화로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사실 그 이전에 볼티모아 경찰청(BPD)은 경찰 긴급전화인 911 이외에 비-긴급 경찰전화 없이 모든 신고를 경찰 긴급전화인 911에 의존하였으며, 볼티모아 경찰청(BPD)의 보고서에 의하면 당시 911전화의 60% 이상이 비-긴급한 사안이었으며 비-긴급 311전화가 시행된 이후 911이용의 급격한 감소와 함께 911전화를 포기하거나 기다리지

못하는 경우 등이 급감한 것으로 보고되었다.[17]

112와 182를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강력범죄나 진행중인범죄, 대형사고등 인명구조가 필요한 경우와 같이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 112 신고를 해야 하고 182번은 과거의 절도사건, 경미한 교통사고, 경찰에 대한 민원, 다른 기관의 업무에 관한 문의 등 응급을 요하지 않는 경우 182 신고를 해야 한다. 이를 위해 112와 182의 구체적인 구분을 위한 세분화작업 및 근거규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112와 182신고처리와 관련한 매뉴얼 작성을 바탕으로 담당직원에 대한 다양한 사례연구와 구체적인 대응체계관련 전문화교육을 실시하여 효율적인 신고 접수업무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휴대폰을 통한 범죄신고가 증가되고 있어 긴급한 경찰대응에 있어 실시간 범죄발생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 신고자 추적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본다.

5.1.3 신고접수와 처리방법의 개선방안

신고접수자는 범죄행위의 급박성 판단, 가족상황·피해상황에 대한 판단을 위해 적합한 질문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하고, 신고접수 중이라도 1차 출동 지령을 내리도록 하여 피해의 확산을 조속히 차단하도록 할 수 있는 뛰어난 판단력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또 신고를 접수한 경우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사건현장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여야 함은 물론, 현장의 안전한 접근을 위해서 가해자의 흉기소지여부, 음주 및 약물복용여부, 공범여부와 같은 현장상황과 가해자에 관한 부수적 정보도 사진에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18] 이를 위하여 112신고접수요원의 전문화와 112신고 접수 매뉴얼을 체계화하는 것이 요구된다. 현재 직업경찰관이 순환근무형태로 112신고 접수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나 순환근무에 불과하여 경찰관의 전문적인 신고접수가 어려운 문제가 있어 112신고 접수요원을 특성화하고 전문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본다. 전문화된 112신고접수요원은 관내 지리와 지형지물을 체계적이고 자세하게 숙지한 상태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범죄피해자의 신고에 응대할 수 있어 범죄피해자의 예방과 보호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112신고가 가능한 여러형태의 범죄에 대한 대응 매뉴얼을 제작하여 112신고요원에게 교육과 평가를 병행함으로써 적극적인 학습에 의한 전문성을 강화할 수가 있고 112접수요원의 전문성강화는 효과적인 범죄대응을

가져와 범죄피해자예방과 보호에 기여할 수 가 있을 것이다.

미국 미시간 대학에서 수행 된 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경찰의 대응에 대한 범죄피해자의 만족도(victim satisfaction)를 결정하는 변수로 경찰대응의 신속성(expectation of response time), 현장출동 경찰관의 조사노력(investigative effort), 경찰의 전문성(professionalism)이 작용하고 피해자의 교육수준이나 소득수준은 범죄피해자의 만족도와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9] 범죄피해자들은 범죄가 발생하였을 때에 경찰관들이 적극성을 가지고 신속하게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같은 연구에서는 경찰관의 출동시간이 피해자가 예측했던 것보다 빨리 도착하였을 경우는 피해자의 만족도가 100%인 것과 대비하여 경찰관의 출동시간이 피해자가 예측했던 것보다 느리거나 같은 때에는 만족도가 느린 경우는 22%이고 같은 경우는 63%라고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20] 이러한 연구결과는 범죄피해자들이 무엇보다도 범죄신고 후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하는 것을 경찰에게 가장 희망하는 사항이고 출동의 신속성은 경찰에 대한 만족도를 좌우한다는 점을 알려주고 있다. 범죄피해자들은 범죄가 발생하여 신고를 한 경우 경찰관이 즉시 출동할 것을 희망하고 있으므로 경찰은 항상 출동태세를 갖추고 범죄피해자를 예방하고 보호하려는 의지와 자세가 요구된다. 이와 같은 신속한 초동조치를 위하여 경찰은 자기 관내의 지리와 특성을 미리 숙지하고 있어야 하며 반복적인 초동조치 대응훈련을 통하여 신속한 현장대응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이다.

5.1.4 112신고와 119신고의 통합

수원 20대 여성 살인사건에서 20대 여성이 성폭행 당한 후 잔인하게 살해된 사건과 같은 범죄를 차단하기 위해 112와 119의 통합운영이 필요하다. 영국이나 미국, 캐나다 등 유럽국가의 경우 통합운영이 되고 있고 전문교육훈련을 받은 민간전문요원들이 담당하여 경찰관보다 전문성이 높다. 네덜란드에서는 시각 장애인들을 시범적으로 채용했는데 눈이 안보이니 청력이 발달해 신고하는 사람의 목소리의 톤이라든지 배경에서 나오는 소리도 모두 파악이 가능했다는 보고도 있다. 경찰청에서 지문 분류 감식하는 일반 민간 계약직 공무원처럼 일반민간 전문가들을 뽑아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누구나, 어

면 관계냐와 같은 질문은 112응급상황에서는 필요하지 않은 질문이고 신고를 접수하는 112요원은 침착하게 신고자가 표현할 수 있는 방식과 무엇이 보이느냐, 얼마나 학교에서 걸어왔느냐 등의 질문 등을 통해 정확한 위치 확인을 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5.1.5 압수·수색의 개선방안

범죄피해자의 피해를 찾아주는 것이 어찌 보면 범죄피해자들이 제일 원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미국 법무성 피해자 대책실(OVC)에서 발간한 책에도 경찰관은 법 집행과정에서 취득한 피해자의 물품에 대해서 취득과정에 대해 말 또는 서면의 형식을 가지고 알려주면서 신속하게 환부하여야 하고 피해품이 훼손된 경우 그 가액에 해당하는 손실보상을 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21]

범죄피해자가 범죄피해품회수를 간절히 희망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범죄피해자보호에 있어 피해품회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 경찰은 범죄피해품회수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고 피해품회수에 관련한 규정의 신설도 요구된다.

또한 초동수사시 효과적인 압수·수색이 가능하도록 위급한 상황 시 위해 방지 또는 제거, 피해자 구조를 위해 경찰관의 판단으로 타인의 토지·건물 등에 출입하여 그곳에 있는 사람, 물건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법제정이 요구된다.

5.1.6 초동수사시 피해자에 대한 배려의 개선방안

피해자 서포터의 내실을 다질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하고 실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경찰서 내에 피해자지원과를 신설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또한 경찰은 어떤 종류의 사건현장이든 관계없이 최초로 출동하는 경찰관을 대상으로 하여 피해자 면접기법 훈련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최초로 출동하는 경찰이 피해자를 상대로 어떤 말이나 태도를 보이느냐에 따라 피해자의 심리상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입훈련이나 피해자를 상대로 하는 화법수사훈련을 통하여 경찰관에게 사건현장 출동시에 피해자에게 사건초기에 따뜻한 배려와 친절한 언행을 교육시키는 것이 피해자보호를 위해 필요하다.

경찰청은 207년 3월 피해자심리상담 전문경찰관을 배치하고 있으나, 앞으로 피해자보호를 위해 증원을 통하여 강력사건이 아닌 일반사건의 경우도 피해자심리상담

경찰관이 활동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여야 한다.

5.1.7 현장출동시 대응방안

사건현장에서의 피해자보호는 경찰이 범죄현장에 얼마나 빠른 시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냐와 현장에서 얼마나 효율적인 피해자 구호가 이루어지는 지에 달려 있다.[22]

범죄현장에서 경찰관이 현장출동하여 범죄자를 제압함으로써 범죄피해자를 예방하고 보호할 수 있는 범죄로는 가정폭력범죄를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가 있다. 범죄현장에 출동하는 경찰관은 사건발생전에 발생가능성이 있는 사건유형별로 현장대응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나 사전에 철저한 훈련을 통해 사건발생시 적절하고 상황에 맞는 출동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사건현장의 상황에 따라 경찰차량이 경광등과 경적을 울리면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인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 경찰차가 아닌 사체차를 이용하여 은밀하게 접근하는 것이 오히려 상황에 맞는 방법일 수도 있다. 그러므로 경찰관은 사건유형에 맞는 출동방법을 선택하여 범죄피해자의 예방과 보호를 이룰 수가 있는 것이다. 현장과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신중하지 못한 출동으로 범죄피해자들에게 또 다른 피해를 야기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하여 사전에 철저한 현장대응훈련이 요구되며 현재 형식적인 훈련을 개선하여 보다 현실적인 훈련방식과 훈련에 따른 결과에 따라 보상과 처벌이 이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경찰청은 다양한 길학습 평가를 개발하여 경찰관의 신속한 출동과 현장 대응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어야 할 것이다.

6. 결어

이상에서 범죄피해자보호를 위한 경찰 초동조치의 실태와 개선방안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경찰에서도 나름대로 초동조치시에 내부법규와 조직을 구성하고 각종 매뉴얼과 제도를 마련하여 범죄피해자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 범죄발생시 초동조치와 관련하여 112신고 시스템 확대구축, 각종 초동조치 매뉴얼 개발과 현장훈련 등의 제도를 이용하여 범죄피해자보호를 위한 경찰활동을 수행한다. 이와 같은 각종 피해자 보호제도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업무수행도중 피해자 보호에 실패하여 비난을 받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여 사회

문제화 되기도 하였다. 앞으로 경찰활동을 통하여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이에 따른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본다.

범죄발생시 초등조치와 관련하여 지역경찰의 인사제도를 개선하여 현장근무자의 근무의지와 근무태도를 변화화하도록 하여야하고 각종 사건에 관한 매뉴얼을 완비하여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할 수 있도록 경찰 신고 체계 개선이 요구되며 압수 수색규정을 개선하여 피해자의 입자를 반영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위급한 상황 시 위해 방지 또는 제거, 피해자 구조를 위해 경찰관의 판단으로 타인의 토지·건물 등에 출입하여 그곳에 있는 사람, 물건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 초동수사시 2차 피해자화를 방지할 수 있도록 피해자를 상대로 따뜻한 배려와 친절한 언행을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이 필요하며 각종 사건에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초동조치매뉴얼에 입각한 현장출동훈련이 요구되고 훈련결과는 경찰관평가에 반영하도록 하여야 범죄피해자보호에 한걸음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경찰청은 다양한 길잡이 평가를 개발하여 경찰관의 신속한 출동과 현장 대응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제도의 개선으로 범죄피해자보호에 관한 경찰의 역할은 보다 충실해질 수 있고 향후 경찰업무수행과정에서 또다시 나타날 수 있는 범죄 피해자 보호실패사례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1] Bree Cook, Fiona David and Anna Grant, Victims' Needs, Victims' Rights - Policies and Programs for Victims of Crime in Australian-, Australian Institute of Criminology Research and Public Policy Series No.19, 1999, 79면.
 [2] 경찰청, 범죄피해자 매뉴얼, 2009, 47면.
 [3] 경찰청, 범죄피해자 매뉴얼, 2009, 49면.
 [4] 경찰청, 경찰백서, 2011, 76-77면.
 [5] 경찰대학, 생활안전경찰론, 2012, 76-77면.
 [6] 경찰청, 지역경찰업무 매뉴얼, 2005, 93-94면.
 [7] 경찰청, 지역경찰매뉴얼, 2005, 69면.
 [8] 경찰청, 실종사건수사 매뉴얼, 2009, 65면.
 [9] 경찰청, 실종사건수사 매뉴얼, 2009, 32-34면.

[10] '수원 살인사건' 경찰 총체적 부실이 부른 참극, 뉴스시스, 2012. 4. 8.
 [11] 오원춘 사건 맡았던 경찰서, 112 신고에 또 부실 대응, 경향신문, 2012.6.22.
 [12] Bree Cook, Fiona David and Anna Grant, Victims' Needs, Victims' Rights - Policies and Programs for Victims of Crime in Australian-, Australian Institute of Criminology Research and Public Policy Series No.19, 1999, 46면.
 [13] 자매 살해사건, "경찰 119 동시출동 왜 못했나?" 노컷뉴스, 2012.07.23
 [14] 경찰청, 경찰통계연보, 2004. 146-147면.
 [15] 경찰 내부비리 전담수사부서 신설...쇄신안 발표, 연합뉴스, 2012.6.11.
 [16] 박원배, 112 범죄신고 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37호, 2009, 175면.
 [17] 박원배, 112 범죄신고 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37호, 2009, 176-177면.
 [18] 김재민, 범죄피해자대책론, 진리탐구, 2006, 283면.
 [19] Steven G Brandl and Frank Horvath, Crime-Victim Evaluation of Police Investigation Performance, Journal of Criminal Justice Vol.19, 109-115면.
 [20] Steven G Brandl and Frank Horvath, Crime-Victim Evaluation of Police Investigation Performance, Journal of Criminal Justice Vol. 19, 115면.
 [21] Laura Moriarity, Policing and Victims, Prentice Hall, 2002. 20면.
 [22] 김용세·김재민, 초동수사와 피해자보호, 형사정책 제18권 제1호, 2006, 437면.

박 호 정



·1990년 : 경찰대학 행정학과(행정학사)
 ·2004년 : 충남대학교(법학석사)
 ·2010년 : 충남대학교(법학박사수료)
 ·2010년 ~ 현재 : 대덕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관심분야 : 범죄피해자보호, 수사
 ·E-Mail : phj1041@hanmail.net